

#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4. 01. 22.  
No. 950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심교언  
www.krihs.re.kr

이진희 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위원

##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 주요 내용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023년 3월 28일)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와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예상
-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자원 확보가 중요
- 난개발되거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공간의 효과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세부적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밀도 인센티브와 기부채납의 연계방안이 필요

### 정책방안

- ① (「국토계획법」과 연계) 농촌특화지구 중 「국토계획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네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국토계획법」과 연계할 필요
  - (대안1)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를 신설
  - (대안2) 「국토계획법」상 관련 용도지구를 세분화
  - (대안3) 「국토계획법」상 기존 용도지구 내용을 수정
  - (대안4)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세분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개발
- ②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지정 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용도, 밀도 등의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등 세부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 ③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기부채납) 주거형·산업형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밀도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 01. 농촌공간 관리 현황 및 관련 제도

## 농촌공간 현황 및 여건 변화

농촌공간은 동(洞)지역으로 이루어진 도시지역 대부분과 용도지역상 비도시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 국토가 해당되어 국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나, 상대적으로 저(低)개발·미(未)관리됨

-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은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보전 및 관리가 목적이며, 여러 규제가 중첩되어 상대적으로 저개발됨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규제 및 관리 내용이 비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농촌공간에도 개발행위허가제가 정착되었으나, 농촌공간에 해당하는 관리지역 중 상대적으로 규제 정도가 낮은 계획관리지역은 주거와 공장의 혼재 등 난개발 문제가 지속

- 난개발로 인한 농촌공간의 농촌다움 상실, 공장 등 유해환경으로 인한 주민 건강 및 안전 문제 발생, 빈집과 폐건축물 방치로 인한 정주환경 악화 및 경관 훼손 등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이 저해됨

## 농촌공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제시

농촌공간 등 비도시지역의 개발과 보전 등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지정 또는 변경된 용도지역·지구로 기준을 함

- 과거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이 「국토계획법」 개정 이후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일정 수준의 개발이 가능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농촌공간은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지구 지정되었음에도, 「국토계획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상 별도의 지구를 지정하거나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규제와 개발이 가능

- 또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위제한을 통한 난개발 방지가 가능하며, 이 외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여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가 가능

2024년 3월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을 통하여 농촌특화지구를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농촌특화지구는 모두 7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개별 지구는 특성에 따라 지정 대상과 기준이 상이하며 허용행위와 제한행위 역시 지구 특성에 따라 차별화

표 1 농촌특화지구 유형

지구명	주요 내용
농촌마을보호지구	• 농촌마을 주민 등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경관농업지구	•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 형성을 통해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지구
농업유산지구	•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산업지구	•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 등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축산지구	•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재생에너지지구	• 에너지원의 환경 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 6.

## 02. 기존 규제·관리 제도와 농촌특화지구 비교

### 농촌특화지구와 기존 규제·관리 제도와 상충문제 발생

7개의 농촌특화지구 중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는 「국토계획법」 및 「산업입지법」에 따른 용도지구, 계획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

-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비시가지지역의 취락 정비를 통한 정주기능 강화 측면에서 「국토계획법」상 '자연취락지구'와 유사
- '농촌산업지구'는 산업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 유도를 통한 난개발 관리 측면에서 「산업입지법」상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와 유사
- 비도시지역 난개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장관리계획'과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주거형과 산업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가능하므로, '농촌마을보호지구' 또는 '농촌산업지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현 상황에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난개발 정비와 함께 공간계획·관리를 위한 요소가 혼재되어 「국토계획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지자체의 혼란이 예상

- 또한 난개발 문제는 대도시 주변이나 도·농통합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공간을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난개발 관리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법령을 통하여 단일 조직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농촌특화지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유사한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행위제한과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허용용도 범위가 넓어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열악한 정주환경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는 조례에 따라 공장과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 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정주환경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우 정주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자연취락지구보다 강화된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건축 가능한 건축물 종류가 협소하여 필요한 시설의 확충에 한계가 있음
- 또한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대상 및 기준 등에 있어 '자연취락지구'와 큰 차이가 없어 제도 간 상충이 예상

'농촌산업지구'와 유사한 5개 제도를 검토한 결과, 「산업입지법」에 따른 2개 제도는 유명무실하며 「국토계획법」상 3개 제도만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내 산업시설 관리수단이 미흡하고 행위제한 완화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부족

-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은 산업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보다는 난개발 관리와 농어촌 시설 설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이외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족
- '농촌산업지구'의 경우 개별입지 공장의 시설 이전, 집적화, 고도화,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인센티브나 지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 또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농촌특화지구보다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한 번에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따라서 농촌특화지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유사 성격의 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이원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운용에 혼란이 없도록 유사 제도를 사전 검토하여 기존 제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03. 농촌공간 관리 및 활성화 과제

## 현행 「국토계획법」과 「산업입지법」상 제도 활용의 문제점

기존 「국토계획법」상의 제도인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은 농촌공간의 난개발 관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지원을 통한 정비 활성화보다는 행위제한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어 있는 농촌공간의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과제) ① 세부 관리계획의 부재로 인한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② 밀도 인센티브 미흡 및 기부채납 등 의무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활성화 한계, ③ 허용용도 혼재로 인한 난개발 대응 부족에 대한 쟁점 진단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농촌공간 관리를 위해 새롭게 제안된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기존 제도와의 상충문제 이외에도,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

(과제) ① 구체적인 기준의 부재와 실질적 관리를 위한 계획 미흡, ②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재정 확보 어려움, ③ 기존 계획 및 규제 내용과의 상충 문제 발생 쟁점 진단

표 2 농촌공간 관리 및 활성화 한계

기존 제도: 「국토계획법」과 「산업입지법」을 통한 관리		신규 제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농촌특화지구 운영	
세부 관리계획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진흥지구나 취약지구는 지정 이후 구체적 관리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여 용도지역이 상충되는 주변과의 부조화 등 난개발 문제가 발생</li> <li>개발진흥지구 내 행위제한 등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관리가 가능하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용도지구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통한 건축제한만이 가능</li> <li>따라서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시, 효과적인 관리에는 한계</li> </ul>	구체적인 기준 부재 및 실질적 관리를 위한 계획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특화지구의 경우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대상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실제 정책 적용에 한계가 예상되며, 지자체 입장에서 정책 시행 시 혼란 발생 가능</li> <li>「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계획 미포함</li> <li>또한 농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경우 모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li> </ul>
밀도 인센티브 미흡 및 기부채납 등 의무 간 연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의 집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준산업단지과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경우 행위제한 완화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재하여 개별 공장의 이전 유도 한계</li> <li>기반시설 의무설치 근거가 부재한 취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내 주거 및 산업시설의 과도한 입지는 자칫 기반시설 부족과 과부하 문제를 야기</li> <li>다만 기반시설 부담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과하게 부여할 경우, 과도한 밀도 완화로 주거환경의 질 저하 가능</li> </ul>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재정 확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특화지구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주민의 불편 예상</li> <li>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지원금 제공이나 우선 지원 외 구체적인 재원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제 정책 적용 시 혼란 발생 예상</li> <li>농촌마을보호지구나 농촌산업지구 모두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필요</li> </ul>
허용용도 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공간 등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시설과 맞지 않는 공장이나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시설, 발전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여 주거환경 악화가 예상</li> <li>또한 허용용도가 제한되더라도, 인근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부재할 경우 주변 지역의 난개발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구나 계획구역의 환경 악화 역시 발생 가능</li> </ul>	기존 계획 및 규제 내용과의 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특화지구의 경우 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허용용도의 혼재 문제는 대응이 가능하나, 가능한 용도의 범위가 너무 작아 주민의 반발이 예상</li> <li>「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계획이나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국토의 관리에 대한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 가능</li> <li>기입지한 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며,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와 비교할 때 강제성이 떨어져 실효성 있는 관리에 한계</li> </ul>

# 04.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 기존 제도를 활용한 농촌공간 관리방안

(대안1)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로 ‘(가칭)농촌관리지구’를 신설,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요건에 해당 용도지구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

- 농촌관리지구를 별도로 신설한 후, 이를 주거형과 산업형으로 세분화하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관리의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행위제한 및 지원 등을 통한 관리가 용이

### 예시 1 신설된 농촌형 용도지구 정의 및 종 세분

- **농촌관리지구**: 농촌의 정주환경 보호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국토계획법」 제37조(용도지구 지정)에 추가)
- **주거형 농촌관리지구(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주거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구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 지정)에 추가)
- **산업형 농촌관리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에 개별입지한 공장과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 지정)에 추가)

(대안2) 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취락지구,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화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추어 관리

### 예시 2 기존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세분화

- [주거형]** 기존 취락지구의 세분화 유형 중 하나로 농촌마을보호지구 추가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7. 취락지구... (중략)...
- 다. **전용취락지구**: 농촌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주거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구(신설)
- [산업형]** 기존 개발진흥지구의 세분화 유형 중 하나로 농촌산업형 개발진흥지구 추가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8. 개발진흥지구... (중략)...
- 사. **농촌산업형개발진흥지구**: 농촌에 개별입지한 공장과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신설)

(대안3) 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자연취락지구와,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개편하여 농촌지역 관리에 적용

### 예시 3 기존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개편

- [주거형]** 기존 취락지구의 세분화 유형 중 자연취락지구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개편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7. 취락지구
- 가. **자연취락지구** ⇒ **전용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취락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거주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개정)
- [산업형]** 기존 개발진흥지구의 세분화 유형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농촌산업형개발진흥지구로 개편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8. 개발진흥지구... (중략)...
-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농촌산업형개발진흥지구**: 농촌에 개별입지한 공장과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개정)

(대안4) 기존 성장관리계획을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농촌특화지구 중 '농촌마을 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를 통합적으로 관리·개발

- 현재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을 비롯한 관련 제도에는 지역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유형 구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령 또는 지침 등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의 성격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유형에서의 행위제한과 인센티브 등을 차등화
- 또한 성장관리계획을 통하여 주거·산업유도구역을 지정할 경우, 양 구역 사이에는 보전구역을 지정하여 상충되는 용도 간 완충지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설 농촌특화지구 실효성 제고방안

(관리방향) 농촌특화지구 지정기준으로 기존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를 참고하여 지정목적과 대상면적, 용적률과 건폐율, 행위제한 등을 규정

표 3 농촌특화지구 세부 기준

구분	(주거형)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형) 농촌산업지구
지정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정요건	• 지정면적 기준으로 10호 이상에서 주거형 취락이 50% 이상 차지	• 지정면적 기준으로 10호 이상에서 공장, 창고를 포함한 산업시설이 50% 이상 차지
면적기준	• 3만㎡ 미만	• 3만㎡ 이상 50만㎡ 미만
결정권한	• 시·도지사	• 시·도지사
건폐율	• 건폐율 50% 이하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	• 용적률 120% 이하
허용용도	• 법령상 허용행위에 따름	• 법령 및 조례상 허용행위 포함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용도지구(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택 정비 및 집수리 사업 시 농어촌주택개량 자금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우선순위 부여 및 무이자 용자 제공</li> <li>• 기존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지역에 위치한 개별입지 공장주가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용도지구(농촌산업 지구)로 이전할 시, 조성비가 이하로 저렴하게 분양하고 용자 지원</li> <li>• 해당 용도지구 내 신규 공장 입주 시 인프라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li> </ul>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농촌특화지구 중 주거형인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산업형인 '농촌산업지구' 지정 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용도, 밀도, 기반시설 등 세부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세부 관리계획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반영하더라도,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으로 최종적 확정

(지원과 의무 간 연계 및 재정 사업 우선 추진) 주거형 및 산업형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밀도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의무·권장사항과 연계하여 밀도 인센티브를 부여

-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앞서 세부 관리계획 수립 시에 도로계획과 권장용도 준수 시 추가적인 건폐율 및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 추가와 함께, 신설된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등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2023.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첫걸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 2월 27일.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sn3hcv\\_v2023/skin/doc.html?fn=FADF15C1-9F4A-8D36-6FB9-3A04FD5C1663.hwp&rs=/sn3hcv\\_v2023/atchtml/bbs/202401/](https://www.mafra.go.kr/sn3hcv_v2023/skin/doc.html?fn=FADF15C1-9F4A-8D36-6FB9-3A04FD5C1663.hwp&rs=/sn3hcv_v2023/atchtml/bbs/202401/) (2024년 1월 12일 검색).

※ 이 브리프는 "이진희, 박효숙. 2023.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이진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jhlee@krihs.re.kr, 044-960-0637)
- **박효숙**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전문연구원(hspark@krihs.re.kr, 044-960-0223)